

국제표준은행관행(ISBP745)의 변경내용과 실무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임재욱(Jaewook Lim)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무역경제학부 조교수,
jaylim@kmou.ac.kr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 참고문헌 |
| III. ISBP745 주요 개정내용 | ABSTRACT |
| IV.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사례 | |

국문초록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이 UCP600으로 개정되자 이에 맞춰 ISBP681로 개정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따라서 ISBP745는 ISBP의 세 번째 버전이자, 두 번째 개정이 되는 셈이다. ISBP의 두 번째 버전인 ISBP681은 UCP의 개정에 따른 것이나,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ISBP745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는 등의 추가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의 변화에 따라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세밀하게 살펴보고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ISBP 규정을 숙지하여 신용장 거래에 있어 서류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국제표준은행관행, 화환신용장통일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

I. 서론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는 ICC Banking Commission의 Opinion과 DOCDEX Decision, Policy Statement 등과 같이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국제표준은행관행들을 발표하여 왔다. 그러나 신용장 서류심사나 서류를 작성하는 실무자들이 이러한 국제상업회의소 발표문을 접하고 이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실무자들이 국제표준은행 관행을 쉽게 이해하고 접근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2년 신용장 서류심사를 위한 국제표준은행관행(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645)의 발간을 승인하였는 바, 이는 국제표준은행관행 중 서류심사와 관련된 관행만 별도로 요약하여 설명한 서류심사 해설서이다.¹⁾

ISBP는 2002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UCP 500) 하에서 ISBP645가 처음 발간된 이래, 2007년 화환신용장통일규칙 UCP600으로 개정에 맞춰 ISBP681이 발간되었고, 다시 2013년 ISBP745가 발간된 것이다. ISBP745는 기존의 ISBP681이 시간 제약에 따라 개정보다는 업데이트 수준에 머물러 국제표준은행관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지적과 UCP600이 시행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 새로운 관행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등의 개정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UCP600하에서 다시 개정된 것이라 할 것이다. ISBP745는 2010년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의 승인을 받은 이래 2012년 6월 모든 항목을 망라한 개정안의 제4차 초안이 발표되었고, 2012년 12월에 제5차 초안이 발표되어, ICC 각국 국내위원회의 코멘트를 받아 2013년 3월에 최종안을 마련하고, 2013년 4월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의 표결에 따라 공포되기에 이르렀다.²⁾

ISBP745는 기존 ISBP68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이 실무적으로 빈번히 사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³⁾ 또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증명서(Weight Note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분석, 검사, 위생, 검역, 수량, 품질 등 기타 증명서(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등 실무현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기존 ISBP681의 185개 항이 298개로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들 서

1)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머리말, 2013.

2) 박세운, ISBP 745에서의 운송서류 개정 사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2호, 2013, 6, 27, p.262.

3) 김동운,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5권 3호, 2013. 9.27, p.189.

류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ISBP745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용장거래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증명서와 기타 서류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며, 이와 관련한 연구 역시 미진한 형편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수익자증명서,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분석증명서, 훈증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또한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II. 선행 연구

1. ISBP645 관련 선행 연구

서정두(2003)은 ISBP가 신용장통일규칙(UCP)의 효력변경없이 이를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 보완서로서 하자서류의 발생건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나아가 신용장 관련 연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ISBP의 제정배경과 의의 및 구성 체계, 주요특징 등을 설명하고 ISBP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였는데, 특히 신용장의 심사대상서류인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특징을 요약 정리하였다. 또한 ISBP가 신용장 실무에 있어서 하자발생 사유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언어규정, 기간경과 선화증권 관련조항, 환어음 기일산정 규정, 운임추가비용 관련규정, 보험담보 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UCP500의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성철(2003)은 UCP500하에서 발행된 ISBP645를 대상으로 UCP상의 서류심사기준과 ISBP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ISBP 적용상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는데, ISBP645에서 독립성의 원칙, 기한산정 관련 용어 해석, 개설의뢰인 앞 환어음 발행 금지, 송장발행인, 선화증권 상의 물품명세, 기본계약 참조 관련 규정 등은 UCP500과 중복규정되어 불필요하거나 해석상의 오류가능성이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이와 같은 조항은 ISBP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운송주선인발행 선화증권(Forwarder's B/L)의 수리요건, 환전유보문언 표시 선화증권의 수리거절에 관한 규정, 서류의 원본요건에 관한 규정, 어음의 만기일 산정에 관한 규정,

항대항(port to port) 선적을 나타내는 운송서류, 포장상태에 대한 유보문언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 무사고표시요구 선화증권에 관한 규정 등은 해석상 또는 실무관행상 충돌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영미(2003)는 신용장의 본질과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제정과정 및 서류요건을 설명하고, 환어음, 송장, 운송서류, 보험서류 등 ISBP 적용 상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전순환(2003)은 비운송서류를 중심으로 ISBP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운송서류 이외에 환어음, 송장, 보험서류, 원산지증명서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 수출업자, 수입업자 및 은행에서 얻게 되는 이익을 제시하는 한편, 신용장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UCP와 함께 ISBP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재필(2004)은 신용장거래에서 ISBP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ISBP의 성격과 중요성 및 신용장의 발행의뢰 및 발생시의 유의사항을 지적하고 거절통지에 있어 면책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였다. 특히 신용장 발행에 있어 명료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애매모호한 지시사항에 대하여 은행이 불확실한 지시에 근거하여 또는 합리적으로 광의의 명세(description)에 포함되는 서류인수를 하는 경우 은행이 면책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신용장 발행에 따른 유의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신용장이 기업법인(corporate) 또는 기업법인의 금융기구 등 비 은행권에서 발행된 경우, 신용장이 은행이 아닌 기업법인에 의하여 발행될 수 있으나 통지은행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하고 신용장 발행인의 신용에 대한 위험부담은 수익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을 설명하였다.

2. ISBP681 관련 선행 연구

이방식, 박석재(2008)는 ISBP681의 개정배경 및 경위, 주요 개정내용 및 특징 등을 정리하였다. ISBP645 이후 신용장의 지급거절 비율이 하락한 사실, UCP600 개정에 따라 ISBP681로 개정(updated)된 경위, ISBP645 200개 조항에서 총 17개 조항이 삭제되는 한편 2개 조항이 신설되어 총 185개 조항으로 변경되었으며, 신설된 2개 조항은 서류의 사본은 서명될 필요가 없다는 것, 용선계약에 따른다는 표시가 포함된 운송서류는 UCP600 제22조의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이 적용된다는 것 등이다. 운송서류의 배치순서는 복합운송의 증가와 이에 따른 복합운송서류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복합운송서류가 가장 먼저 배치되고 이후 선화증권,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의 순서로 배치되었음을 밝혔다.

강원진(2008)은 ISBP의 생성배경과 업데이트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ISBP681의 업데이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SBP681은 UCP600의 개정에 따른 것이며, UCP600 관행에 일치시켜야 할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밝히고, ISBP645의 200개 세부항목에 비하여 ISBP681은 UCP600의 적용에 따라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총 15개 문항을 삭제하여 총 185개 항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혔다. ISBP681에서는 ISBP645에서 사용된 모순(inconsistency)라는 표현이 상충(conflict)로 변경되고, 송장의 물품명세를 물품, 서비스 또는 이행의 명세로 확대함으로써 서비스매매에도 신용장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 운송서류에 관한 규정을 UCP600과 일치하도록 변경 등을 지적하였다.

김재우(2008)는 UCP600하에서 복합운송조항의 서류일치성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ISBP681 하에서 복합운송서류의 수리가능요건을 정리하였다. ISBP는 UCP500 13조 a항이 “서류의 문면상 신용장 제 조건과의 일치성여부는 이 규칙에 반영된 국제표준은행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된 국제표준은행관행이 기본취지를 조문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ISBP가 신용장의 서류작성과 심사의 국제적인 통일성을 높이고 서류하자 발생을 줄이는 역할을 함을 지적하였다. ISBP681의 복합운송서류 수리가능요건에 대하여 복합운송서류의 명칭, 발행통수, 서명, 본선적재표시, 수탁지, 발송지, 본선적재 및 목적지, 수화인, 지시당사자, 송화인 및 배서, 착화통지처, 물품명세, 환적과 분할선적, 정정 및 변경, 운임과 추가비용, 복수의 운송서류 등의 조항을 요약정리하였다.

김종철(2008)은 신용장 하에서 서류심사기준과 심사의무를 설명하고 물품명세의 일치성 요건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는 한편, 다른 물품의 존재여부, 서류기재상의 오타, 타이핑상의 오류, 물품명세의 기타조항에 관한 해석 등에 관한 평석을 제공하였다. 실무적 시사점으로 상업송장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은행이 다른 서류에 비하여 상업송장에 대하여 다소 엄격한 일치성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상업송장이 신용장조건과 문면상 일치하여야 함과 실제 선적된 물품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하고, 상업송장 상의 수량, 중량, 용적 등의 표시가 선화증권이나 기타 다른 서류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물품명세에 대한 오기 내지 오타로 인정되는 경우는 단어나 문장 등이 그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물품명세에 있어 신용장에 제시된 내용과 동종성이 있고 단가가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 신용장의 물품명세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서 누락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는 것 등을 지적하였다.

3. ISBP745 관련 선행 연구

박세운, 한기문(2012)은 ISBP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ISBP 제정 및 개정 경과 및 효력, 주요개정사항과 특징, 실무적 유의점과 제언 등을 정리하였다. ISBP745는 국제무역이 실무를 반영하고 규칙이 아니므로 ‘mus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전자서명의 취급방법을 더 자세하게 규정하였다는 것, Surrendered B/L이 규정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지적하였다.

박세운(2013b)은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ISBP 제정 및 개정의 경과와 효력, 일반원칙과 환어음 관련 주요개정사항을 분석하고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는바, 일람 후 정기출급어음의 만기일 계산, ISBP745와 자기은행의 관행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ISBP에 따르거나 또는 ISBP 조항 적용 배제의 취지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동운(2013)은 ISBP745의 주요개정사항을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는바, ISBP745가 A에서 Q까지 각 항목별로 내용을 구분하고, UCP 600과 용어의 일치나 내용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인정하였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ISBP745가 여전히 일부 모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일례로 환어음 만기일 계산과 관련된 일부 모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장 거래에서 UCP 600은 물론 ISBP745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불일치에 따른 대금지급 거절을 대비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박세운(2014)은 ISBP745에서 원산지증명서, 수익자증명서, 검사증명서를 중심으로 서류심사 기준을 설명하고, 신용장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들 서류에 대한 ICC 공식의견, DOCDEX 결정과 판례 등을 이용하여 이들 서류의 ISBP745 규정의 근거 및 당위성을 검토하고,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Ⅲ. ISBP745 주요 개정내용

1. ISBP745 개정사항

ISBP745는 기존 ISBP681에서는 없었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증명서(Weight Note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분석, 검사, 위생, 검역, 수량, 품질 등 기타 증명서(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등 실무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기존 ISBP681의 185개 항이 298개로 확대되었다. 김동윤(2013)은 ISBP681과 ISBP745를 비교하여 개정된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ISBP681과 ISBP745의 비교

내용	ISBP681	ISBP745
사전고려사항	1-5	i ~vii
일반원칙	6-42	A1~A41
환어음과 만기일 산정	43-56	B1~B18
송장	57-67	C1~C15
적어도 두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을 표시하는 운송서류(복합운송서류)	68-90	D1~D32
선화증권	91~114	E1~E28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	-	F1~F25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115-133	G1~G27
항공운송서류	134-156	H1~H27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157-169	J1~J20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170-180	K1~K23
원산지증명서	181-185	L1~L8
포장명세서, 포장노트, 포장약기서	-	M1~M6
중량증명서, 중량노트, 중량약기서	-	N1~N6
수익자증명서	-	P1~P4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수량증명서, 품질증명서, 기타 증명서	-	Q1~Q11

출처: 김동윤(2013) pp.181~182

위 <표 1>을 살펴보면 ISBP745에서는 ISBP 681에는 없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F), 포장명세서(M), 중량증명서(N), 수익자증명서(P), 기타 검역, 수량, 품질증명서 등(Q)이 신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용장 거래에서 선화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와 송장 등의 서류와 함께 이들 서류가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서류들 이외에도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 우편영수증(Post Receipt),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명서(Insepection Certificate), 훈증증명서(Fumigation Certificate), 선적전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 등 수많

은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⁴⁾이 신용장 거래에 등장하는 바, 이들 증명서 및 기타 서류들에 관한 규정이 상당부분 ISBP745에 추가 및 신설되었다는 것은 신용장 거래에서 서류일치여부에 따른 분쟁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신용장에서는 Field 46A의 Documents Required에 제시된 서류 이외에 Field 47A의 Additional Instruction에서 수익자에 대하여 여러 가지 행위⁵⁾를 지시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를 첨부하라는 요구가 추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렇게 추가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서류의 형식적 제출 여부만으로 일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ISBP745에서 이러한 서류들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신용장거래에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SBP 745에서 신설된 조항은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F), 포장증명서(M), 중량증명서(N), 수익자증명서(P), 기타서류(Q) 등이다.

2. ISBP 745 사전고려사항 및 일반원칙

ISBP681과 ISBP745의 사전고려사항 및 일반원칙⁶⁾의 내용 비교하여 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ISBP681과 ISBP745의 사전고려사항 및 일반원칙 비교

Contents	ISBP681	ISBP745
사전고려사항	1~5	i ~vii
약어	6~7	A1~A2
증명	7	A2
증명서, 표명서, 진술서	8	A3~A5
UCP600 제19조~제25조가 적용되는 운송서류의 사본	-	A6
정정과 변경	9~12	A7~A9
특송영수증, 우편영수증, 우편증명서	-	A10
일자(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훈증증명서, 선적전검사증명서 등)	13~18	A11~A16

4) Certificate of Shipping Company or Agency of Shipping Company, Shipping Advice, FAX Message, Quality Approval 등 실제 신용장거래에서 사용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다.

5) 예를 들어, 선적 전에 상품견본을 발행의뢰인(Applicant)에게 특송(Courier Service)으로 발송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 증명서와 함께 특송영수증을 요구하는 행위

6) ISBP681 제6조~제42조, ISBP745 A1~A1.

Contents	ISBP681	ISBP745
서류와 공란 또는 박스의 기입필요성	-	A17
UCP 600의 운송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서류	19~20	A18
UCP에서 정의되지 않은 표현	21	A19
서류의 발행인	22	A20
언어	23	A21
수리적 계산	24	A22
오자나 오타	25	A23
복수의 페이지로 이루어진 서류와 첨부서류 또는 부속서류	26~27	A24~A25
비서류적 조건과 정보의 저촉	-	A26
원본과 사본	28~33	A27~A31
하인	34~36	A32~A34
서명	37~40	A35~A38
서류의 제목과 결합서류	41~42	A39~A41

UCP600 제19조~제25조가 적용되는 운송서류의 사본에 관한 규정은 ISBP681에는 없던 규정으로 ISBP745에서 새롭게 포함되었다.⁷⁾ 운송서류 사본은 신용장에 명확하게 명시된 한도 내에서만 심사되어야 하고 다른 명시가 없다면 UCP600 제14조 f항에 따라 심사되어야 한다. 또한 운송서류 사본에 나타나는 정보는 그 서류 또는 기타 명시된 서류 또는 신용장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그와 저촉(conflict)되어서는 안된다. 서류송부나 통지 등에 관한 특송영수증, 우편영수증, 우편증명서 역시 ISBP745에서 새롭게 규정된 서류이다. 이들 서류가 물품운송을 커버하는 경우 UCP600 제25조가 적용되나, 서류송부나 통지에 관한 경우에는 UCP600 제14조 f항이 적용된다.

운송서류의 발행일과 관련하여 기존의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선적전검사증명서 외에 훈증증명서가 추가되었다. UCP 600 제19조~제25조가 적용되는 원본 운송서류의 발행일은 문맥상 선적일을 알 수 있을 때에는 발행일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ISBP 681 제13조에서는 환어음, 운송서류 및 보험서류는 신용장이 명확히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반드시 일자가 기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ISBP 745에서는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에 사건의 발생일자가 표시되어 있다면 신용장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서류와 공란 또는 박스 기입필요성도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규정이다. 서류의 공

7) ISBP745 A6.

란이나 박스가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⁸⁾ ISBP745 A26의 비서류적 조건은 신용장에서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으나 특정 서류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건은 비서류적 조건이 되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어떠한 서류에도 해당 조건에 대한 증명을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신용장에서 요구된 서류에 나타난 정보와 해당 비서류적 조건 사이에 정보의 저촉(conflict)이 있어서는 안된다.

ISBP746 A39는 서류의 제목과 결합서류(Title of documents and combined documents)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는바, 서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제목, 유사한 제목, 또는 제목이 없어도 무방하다. 서류의 내용은 요구되는 서류의 기능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⁹⁾ 그러나 제시된 서류는 UCP600 제14조 f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3. ISBP745 증명서 등 선적서류 관련 조항

ISBP745는 원산지증명서 이외에 증명서(Certificate, Certification), 신고서(Declaration) 및 진술서(Statement)에 대하여 해당 서류의 서명, 발행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¹⁰⁾ 서류송부나 통지 등에 관한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및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등의 서류¹¹⁾,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¹²⁾,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와 훈증증명서(Fumigation Certificate)¹³⁾, 선적전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¹⁴⁾, 인도명세서(Delivery Note), 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화물수령증(Cargo Receipt), 운송주선인 수령증명서(Forwarder's Certificate of Receipt), 운송주선인 선적증명서(Forwarder's Certificate of Shipment), 운송주선인 운송증명서(Forwarder's Certificate of Transport), 운송주선인 화물수령증(Forwarder's Cargo Receipt), 본선수취증(Mate's Receipt)¹⁵⁾,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명세서(Weight List),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수량증명서(Quantity Certificate), 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e) 등의 서류가 언급되어 있다.

8) ISBP745 A17.

9) 예를 들어 "Packing List"를 요구하는 경우 서류가 포장명세서(packing details)를 포함하고 있다면, 해당 서류의 제목은 "Packing List", "Packing Note" 등의 제목도 가능하고, 제목이 없더라도 무방하며, "Packing and Weight List"와 같이 두 가지 내용이 결합된 결합서류도 무방하다. ISBP745, A39.

10) ISBP745, A3과 A4. 선사가 발행하는 선적증명서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11) ISBP745 A10.

12) ISBP745 A11의 b항과 A12의 a항, c항.

13) ISBP745 A12의 a항.

14) ISBP745 A12의 b항.

15) ISBP745 A18.

ISBP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ISBP745의 개정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ISBP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히 이루어진 편이나 ISBP745에서 대폭 포함된 비운송서류, 특히 각종 증명서 및 영수증에 관한 연구는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ISBP745 각 조항에 제시된 각종 서류들에 관한 분석과 ISBP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실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선적통지서, 비목재포장증명서, 승인증명서 등 다양한 종류의 증명서와 서류들에 대한 사례를 통하여 신용장 거래에서 유의하여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IV.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사례

포장명세서, 중량명세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위생증명서, 검역증명서 수량증명서, 품질증명서, 기타 증명서들은 신용장 조건에 따라 제시되는 경우 신용장과 동일한 제목 또는 유사한 제목으로 기재되어도 되고 심지어 제목이 없는 서명된 서류의 제시로 충족된다.¹⁶⁾ ISBP745에 제시된 각종 서류들과 신용장 거래에서 자주 등장하는 서류들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자증명서

증명서(Certificate, Certification), 신고서(declaration)¹⁷⁾, 진술서(statement) 등은 별도의 용어로 구분하지 않는데, 이는 각 나라 또는 법원에서 의미의 구분없이 동일한 의미를 다른 용어로 사용하는 관행을 반영한 것이다.¹⁸⁾ 또한 신용장에서 위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경우 서명되어야 하며,¹⁹⁾ 해당 서명은 수익자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²⁰⁾ 수익자증명서의 기본적 요건으로 신용장에서 수익자 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정보와 증명사항을 담고 있어서 증명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면, 신용장에 제시된 서류와 동일한 제목 또는 유사한 제목으로 기재되어도 되고 심지어 제목이 기재되지 않아도 된다.²¹⁾

16) ISBP745, M1, N1, P1, Q1.

17)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행한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에 따르면 declaration을 '표명서'라고 번역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신고서'라고 번역하였다. 이는 통관과 관련하여 'declaration for export(import)'를 '수출(입) 신고서'로 번역하는 점에 기반하였다.

18)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p.18, 2013.

19) ISBP A4.

20) ISBP P2.

박세운(2014.3.31)은 수익자증명서의 내용 중 다음 <예 1>²²⁾과 같은 경우, 수익자증명서의 내용에 반드시 신용장의 문구를 그대로 적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히고, 다만 기재된 정보가 신용장조건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따라 "We certify that we have dispatched one set of ~"와 같이 수익자증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 예시를 다음 <예 1>과 같이 제시하였다.

<신용장 예 1>

46A: 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 is to send one set of copy documents to the applicant by courier service comprising a copy of the bill of lading, invoice, packing list, weight list, insurance certificate and inspection certificate and a certificate to this effect is required.

그러나 일반적으로 신용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용장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선적서류 사본을 특송운송업체(courier service)를 이용하여 발행의뢰인(applicant)에게 발송하고, 이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를 발행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문구의 변형을 실제로 사용할 지는 의문이다. 즉 무역기업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에 기재된 문구 그대로 삽입하여 수익자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다. 두 번째는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신용장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그에 맞게 서류가 갖추어져 있는 지 확인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은행 실무에서는 신용장의 문구를 확인하고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신용장이 요구하는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나아가 점차 줄어드는 신용장 사용의 비중을 고려하여 볼 때 은행의 각 지점에 신용장 서류심사에 능숙한 직원을 배치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지 신용장에 기재된 문구가 그대로 수익자증명서와 같은 서류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는지만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수익자증명서의 문구는 신용장의 문구가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한편 수익자증명서는 이외에도 매우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대부분 Field 46A: Documents Required가 아닌 Field 47A: Additional Conditions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 수익자증명서가 요구되는 여러 가지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ISBP P1.

22) 박세운(2014), p.34.

<신용장 예 2>

47A: Additional Conditions:

+ Beneficiary must airmail one set of the original document including 1/3 original B/L direct to accountee within 2 days after the B/L date and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is required.

위 <예 2>와 같은 경우, 원본 선화증권 1부를 포함한 원본 서류 1세트를 선적일로부터 2일 이내에 accountee인 수입업자에게 항공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Field 47A에 기재되어 있으나 수익자 증명서가 요구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 예 3>

46A 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s Statement that Made in Korea is mentioned on packing from outside and is engraved or stamped on each piece of goods.

위 <예3>과 같은 경우 각 물품과 포장 겉면에 'Made in Korea'라는 문구를 새기거나 스탬프로 표시하여 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진술서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장 예 4>

46A 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s Certificate evidencing that each piece/packing unit of goods carries name of country of origin in an irremovable an indelible way.

위 <예 4>와 같은 경우 각 상품과 상품포장에 원산지 표시를 지워지지 않게 표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또한 하나의 신용장에 여러 개의 수익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 <신용장 예 5>와 같다.

<신용장 예 5>

46A: Documents Required:

- + Beneficiary's attestation²³⁾ certifying that production samples have been sent to applicant before shipment of the goods for approval by courier service
- + courier receipt²⁴⁾
- + Beneficiary's attestation certifying that the original of origin certificate visaed by the Chamber of Commerce or an official organization have been set to applicant by courier service at the day of shipment
- + courier receipt

위 <예 5>와 같은 경우 수익자는 물품의 선적 이전에 개설의뢰인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물품의 견본을 특송업체를 통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와 관련 특송업체 영수증(courier receipt)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선적 당일에는 상업회의소 또는 공공기관이 인증²⁵⁾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역시 특송업체를 통하여 개설의뢰인에게 발송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 관련 특송업체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신용장은 복수의 수익자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위 사례의 경우 특송업체 영수증(courier receipt)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송업체 영수증에 관하여는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다음 예와 같은 경우 FOB나 CFR과 같은 조건의 경우, 해상적화보험은 수입업자인 개설의뢰인(applicant)이 부보하게 되는데, 개설의뢰인이 미리 현지에서 보험에 부보하고 해당 신용장 하에서 선적되는 모든 선적물품에 대하여 선적당일에 해당 보험사 및 개설의뢰인에게 팩스 등으로 통지하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한 수익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23) 신용장에서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를 요구하는 경우, 신용장이 요구하는 제목의 서류, 당해 서류가 신용장이 요구하는 증명을 반영하는 제목(title)의 서류 또는 제목이 없는 서류의 경우에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정보와 증명을 포함하는 서명된 서류의 제시로 충족된다. ISBP745 A3. 따라서 수익자진술서(Beneficiary's attestation)와 같은 이름의 서류도 이에 해당된다.

24) ISBP745 A10. 신용장에서 서류나 통지 등을 발송한 증빙서류로서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러한 서류는 오직 신용장에서 명확하게 명시된 범위 내에서 심사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신용장통일규칙(UCP) 600 제25조가 아닌 제14조 (f)항에 따라야 한다.

25) visaed(사증이 발급된)라는 표현은 certified(인증된)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사용됨.

<신용장 예 6>

47A: Additional Conditions

+ Insurance covered by openers. All shipments under this credit must be advised by the beneficiary on the same date of shipment direct to XXX Insurance Co., Ltd. (with address) and to openers referring to cover note No. 12345 dated 15-11-2014 giving full detail of shipment(s). Beneficiary's Certificate to this effect and copies of such shipment advices must accompany documents.

위 <예 6>과 같은 경우 수출업자인 수익자(Beneficiary)는 선적일 당일에 개설의뢰인이 제시한 보험부보 사항(일자와 보험부보 일자 등)을 명시하여 보험자(보험회사)와 개설의뢰인에게 팩스 등으로 통지하고 이와 같이 선적통지(shipping advice)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와 팩스 사본을 선적서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수익자증명서의 내용은 매우 다양하며, 신용장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제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신용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 우편영수증(Post Receipt) 등

ISBP745 A10은 서류송부나 통지 등에 관한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 우편영수증(Post Receipt), 우편증명서(Certificate of Posting) 등에 관한 규정이다. 이들 서류가 물품의 운송서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UCP600의 제25조가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에서 물품운송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서류발송의 증빙서류로 이와 같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UCP600 제14조 f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송영수증(Courier Receipt)은 신용장에서 물품의 견본이나 서류 등의 발송을 지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로 날짜가 기재된 특송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 경우 신용장이 요구하는 서류에 포함된다. 위의 <신용장 예 5>에서 보듯이 선적일 이전에 물품의 견본을 수익자에게 특송(Courier Service)으로 발송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특송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거나, 선적 당일에 선적서류 한 세트를 수익자 또는 발행은행에 송부하고 이를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와 함께 특송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 경우가 그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 상

에서 특정사항을 지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지시한 경우, 특송영수증도 서류에 포함되며, 해당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할 근거가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용장의 문구를 꼼꼼히 체크하고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와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는 이미 ISBP681 제14조에 언급되어 있는 규정이다. 이들 서류는 선적전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pection Certificate)와 함께 선적일 이전에 발행되어도 무관하다. 다만 선적전검사증명서는 증명서의 제목이나 내용에 의하여 선적전에 해당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한다.²⁶⁾

4. 훈증증명서(Certificate of Fumigation)

훈증증명서도 ISBP681에 없던 내용이 ISBP745에서 새롭게 등장되었다. 훈증증명서는 나무틀(cradle)을 포함한 목재 포장 화물의 경우 선적항에서 발행된 훈증소독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화물포장에 목재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비목재포장신고서(non-wooden package declaration)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상대국 식물검역기관에서 인증한 열처리증명서나 MB훈증증명서와 같은 서류의 제시없이 목재팔레트(Wooden Pallet)에 IPPC²⁷⁾ Mark 표시함으로써 통관절차를 보다 간소하게 하고 있다.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상의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ISPM; International Standard for Phytosanitary Measures) 규정²⁸⁾에 따라 수출 및 수입 시 사용되는 목재포장재의 소독처리에 관한 국제규정은 ISPM 15를 근거로 소독처리 및 국제인증처리표시²⁹⁾를 하도록 규정

26) ISBP681 제14조와 ISBP745 A12의 a항.

27) 국제식물보호협약(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으로 목재팔레트(Wooden Pallet)와 같은 목재로 된 포장재의 경우 해충이나 벌레의 알 등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수입 시에 이와 같은 목재가 함께 반입된다면 수입국의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살충 또는 훈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IPPC Mark라고 하는데, ISO 국가코드와 소독업체코드, 소독방법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소독방법으로는 열처리(HT; Heat Treatment), 메틸브로마이드살충훈증(MB; Methyl Bromide), 탈피(DB; Debarked)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시에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또는 MB훈증처리하고, 소독처리마크를 표지하거나 식물검역증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 시에는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경우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하고, 검역요건에 적합하게 소독 후 소독처리마크가 표지된 경우 신고를 면제하여 주고 있다.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2013-114호,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28) ISPM 15, Regulation of Wood Packaging Material in International Trade, 2009. 농림축산검역본부(http://www.qia.go.kr/localFile/ISPM_No_15.pdf) 가공하지 않은(raw) 목재로 만든 목재포장재의 국제 교역에서의 이동과 관련된 검역병해충의 유입 및 확산 위험을 감소시키는 식물위생조치로, ISPM 15가 규정하는 목재포장재는 해충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된 목재(예를 들면 합판)로 만든 목재포장재는 제외되며, 짐갈개(dunnage)는 포함된다.

하고 있다. 훈증증명서는 훈증업체에서 발행하게 된다. ISPM은 plant product에 관한 훈증을 규정하고 있다. 베니어합판과 같은 가공목재는 훈증의 대상이 아니다. 신용장 문구에서 훈증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5. 비목재포장재신고서(Declaration of No Wood Packing Material)

비목재포장재신고서는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따라 수입물품의 포장재가 목재인 경우, 수입국의 식물자원보호를 위하여 훈증처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만일 포장재에 목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용장 상에 이를 증명하는 신고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용장 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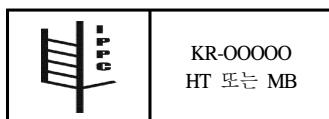
46A Documents Required:
+ Declaration of No Wood Packing Material in triplicate

위 <예 7>의 경우 “It is declared that this shipment~ does not contain any wood packing material”, 또는 “We declared that the goods shipped ~ does not contain any wood packing material”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신용장 상에 비목재포장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6. 선적전검사증명서(Pre-shipment Insepection Certificate)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란 물품의 선적 이전에 필요한 검사를 수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리키는데, 통상 법규 등에 따라 선적 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 있다. 선적전 검사는 국가마다 다르며 통상 수입업체의 요구에 따라 수출업체가 선적 전에 수입업체가 지정한 대리인, 또는 공인된 검정회사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된다. 선적전검사증명서는 ISBP681 14조에 언급되어 있는데, 신용장이 선적전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선적 일 이전에 해당 검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 반드시 선적전검사증명

29)



-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
-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KR)
- 00000(소독업체코드)
- 검정색 청색 등으로 2개면 이상에 표시하여야 함

서의 발행일이 선적일 이전일 필요는 없고, 해당 증명서의 제목이나 내용이 선적전에 해당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하는 것이라면 상관없다.³⁰⁾ 만일 선적전검사증명서가 아닌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인 경우에는, 선적전 검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선적 이전에 검사가 이루어졌음을 증빙할 필요는 없다.³¹⁾

7. 선사증명서 (Certificate of Shipping Company)

ISBP745³²⁾에 의하면 예를 들어 신용장에서 운송인이나 그 대리인에 의하여 서명되고 선박의 선령이 25년 이하라고 기재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첫째 선박이 건조된 일자 또는 년도가 표시되고 그러한 일자 또는 년도가 선적일이나 선적이 완료된 연도보다 25년 이내인 경우 해당 증명서의 발행일자는 불필요하며, 증명서에 신용장에 명시된 문구가 표시되어 있고 이러한 표시가 그 증명서의 발행일을 기준으로 선박의 선령이 25년 이하라고 증명하는 경우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선사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 Company)는 통상 선사(shipping company)가 발행하나, 선주(ship owner), 대리점(agent) 또는 선장(captain)이 발행하기도 하며 이는 신용장 조건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따라서 선령(ship's year)이나 동맹선(conference line vessel) 선적, 정기선(regular line vessel) 등과 같은 선적관련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선사증명서를 서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신용장 예 8>

46A Documents Required:
+ Shipping Company's Certificate or their Agent's Certificate stating that the carrying vessel belongs to regular line and not more than 15 years age.

위 <예 8>의 경우는 물품을 선적하는 선박이 정기선사에 소속되어 있으며, 선령이 15년 이하임을 증명하는 선사증명서 또는 선사대리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통상 이슬람권의 국가들에서 발행된 신용장의 경우 이와 같은 선사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30) ISBP681 14와 ISBP745 A12의 b항.

31) ISBP745 A12의 c항.

32) ISBP A4.

<신용장 예 9>

46A Documents Required:

+ A Certificate issued by the owners, agent or master of the vessel certifying that the age of carrying vessel is not over than 14 years of age at time of loading and after transshipment if D/C permits transshipment and that shipment is effected by classified vessel subject to classification clause dated 1/1/2001 to be presented with the documents similar certification on bill of lading is acceptable.

위 <예 9>는 선주, 대리점 또는 선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증명내용은 물품선적 당시와 신용장이 환적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환적 이후의 선박 선령이 14년 이하이고, 해당 선박이 2001년 1월 1일자 선급조항에 따라 선급인증된 선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한 선화증권 상에 유사한 증명이 포함되어 있다면 수리가능하다는 내용이다.

<신용장 예 10>

46A Documents Required:

+ A Certificate issued by the owners, agent or master of the vessel certifying that the vessel carrying the goods or merchandise to the Syrian Arab Republic is not Israeli and will not call on any Israeli port during this voyage and the vessel is not banned from entry to the ports of the Syrian Arab Republic for any reason whatsoever according to the Syrian laws and regulations.

위 <예 10>의 경우, 이슬람국가인 시리아아랍공화국으로 운반되는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이스라엘 국적이 아니며 항해도중 이스라엘 항구에도 기항하지 않을 것과 시리아아랍공화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이유에서든 시리아아랍공화국의 항구에 진입금지되지 않은 선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주, 대리점 또는 선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장 예 11>

47A: Additional Conditions
 + Documents to include a certificate from the Shipping Company/Owner/Agent/Captain of the vessel, showing its name, flag and nationality, also confirming that it will not pass through Israeli waters enroute to Qatar and is permitted to enter Arab Ports. This certificate must be legalised by the State of Qatar Embassy/Consulate in the exporting country.

위 <예 11>은 선박명과 선박의 국적을 표기하여 해당 선박이 카타르로 항해하는 동안 이스라엘 영해를 지나지 않을 것과 아랍 지역의 항구에 기항하도록 허가받은 선박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선사/선주/대리점/선장의 증명서가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해당 증명서가 수출국에 있는 카타르대사관/영사관에서 인증받아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Field 47A에 기술되어 있으나 서류요구조건이므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예 12>

47A: Additional Conditions
 + Shipment must be made by conference line vessel only, duly classed, and documents must include a certificate in duplicate from the shipping company that the shipment has been made by conference line vessel, duly classed, evidencing therein the name of the member and name of conference.

위 <예 12>의 경우 물품의 선적은 오로지 정히 선급인증을 받은 동맹선사의 선박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같은 사실의 증명과 함께 해운동맹³³⁾의 이름과 해운동맹 가입 선사명이 기재된 선사증명서 2부가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다. 통상 선사가 발행하는 선사증명서(Certificate of Shipping Company)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다.

33) 해운동맹은 정기선 항로에서 지나친 운임경쟁을 회피하고 동맹선사들의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특정 노선에 취향한 선사들이 운임협정을 맺은 일종의 카르텔을 의미한다. 해운동맹은 1873년 캘커타 해운동맹을 시작으로 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한 수많은 선사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왔으나 2008년도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운동맹은 폐지되게 되었다. 현재는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를 통하여 운임경쟁보다는 항만의 공동운항, 선박의 공유협정 체결, 배선협조, 환적가능 등의 장점을 서로 활용하는 체제로 전환하였다. 대표적인 정기선 시장의 전략적 제휴로 P3, G6, CKYH 등이 있다. P3는 세계 1~3위 선사인 덴마크의 Maersk, 스위스의 MSC, 프랑스의 CMA CGM 등이 추진한 가장 규모가 큰 전략적 제휴이나 중국 상무부가 해운시장의 경쟁제한(시장점유율 40%)을 이유로 불허판정을 내림에 따라 세계 1,2위 해운선사인 Maersk와 MSC가 2015년 1월 2M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어 세계 3위인 CMA-CGM가 차이나쉬핑(CSCL), 두바이 UASC 등이 Ocean3 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한국의 현대상선은 G6, 한진해운은 CKYH에 각각 속하여 있다. 한국선주협회

간혹 Additional Conditions에 “Shipment must be effected by conference line vessel only”와 같이 기재하고 선사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비서류조건에 해당되어 간혹 비동맹선(non-conference line vessel)에 선적되었음을 이유로 대금결제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용장 문구에서 선사증명서를 요구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만일 선사증명서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선적서류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신용장 예 13>

46A Documents Required:

+ Signed certificate from the shipping company or its agent with the following wording:

We certify that at the time of loading the carrying vessel named ABC is ISM code certified and holds a valid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as well as a valid ISM code document of compliance as required by the SOLAS convention 1974 as amended.

위 사례는 다음의 문구를 포함하는 선사 또는 대리점의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즉 당사는 선적당시 물품을 수송하는 ABC선박이 ISM 규정 인증³⁴⁾을 받은 선박이며, 1974년에 개정된 SOLAS 협정³⁵⁾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과 일치하는 ISM 규정 서류 원본은 물론 ISM 인증서 원본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이 경우에도 선적서류에 선사증명서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34)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와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가 주도하여 70년대부터 90년대 초까지 발생한 유조선을 중심으로 한 상선의 대형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선박운항과 안전관리에서 인적과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판단 하에, 해상조직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 전체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제정되었다. 1987년 IMO 제15차 총회에서 Shipboard/Shorebased Management Procedure에 관한 지침 개발을 지시하고, 1989년 IMO 16차 총회에서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채택하였으며, 1993년 5월 해사안전위원회에서 ISM Code 초안 확정 후, 같은 해인 1993년 11월 IMO 제18차 총회에서 ISM Code가 채택되었다. ISM Code 최근 개정판은 2013년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ISM Code 2014), 선사가 ISM Code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외국 화주의 선박사용기피, 기항국의 운항정지조치 등이 가능하고, 국제보험업계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지는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35)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 1974. 선박의 구조, 장비 및 운영에 관한 최소기준으로 상선(merchant ships)의 안전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규칙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초 버전은 타이타닉 호 사건의 영향으로 1914년 채택되었으며, 1929년, 1948년, 그리고 1960년의 개정을 거쳐 1974년 새로운 협약으로 채택되었다. 1994년 해사안전위원회(MSC)는 SOLAS 제9장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관리(Management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의 신설을 결정하고, ISM Code를 SOLAS협약 제9장에 삽입함으로써 ISM Code가 강제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SOLAS 협약 및 ISM Code를 해사안전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8.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

<신용장 예 14>

46A Documents Required:
+ Beneficiary's copy of FAX sent to ABC bank Fax No. : 00961 1 12345 informing us date of shipment, vessels's name, container's number, expected time of arrival of goods at port of destination and showing our L/C reference No. Beymar 9876/2014.

위 <예 14>와 같은 경우 신용장 발행은행인 ABC은행에 신용장 번호 Beymar 9876/2014를 명시하여 선적일, 선박명, 컨테이너 번호, 목적항 도착예정시간(ETA) 등을 팩스로 송부하고, 팩스사본³⁶⁾도 선적서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신용장 예 15>

47A: Additional Conditions
+ Insurance covered by the openers locally through M/S LIBANO SUISSE., P.O.BOX 123, Doha, Qatar FAX 12345 to whom all shipments are advised. Copy of such advice is to be attached with documents.

위 <예 15>의 경우 별도로 수익자증명서는 요구하지 않았으나, 발행의뢰인인 수입업자(openers)가 카타르 현지에서 LIBANO SUISSE 사에 보험을 부보하였고, 모든 선적에 대하여 동 보험사에 선적통지할 것과 팩스로 통지한 선적통지서 사본을 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팩스통지서가 Field 46A(요구되는 서류)에 기술되지는 않았으나, 선적서류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36) 이와 같이 팩스 등으로 발송하는 선적통지서는 전송보고서(Teletransmission Reports)에 해당한다. ISBP A19의 a항.

<신용장 예 16>

47A: Additional Conditions

+ Where transshipment is allowed, the beneficiaries must telex./fax advise us the port of transshipment and the name of on carrying vessel, and copy of such advice to accompany the documents.

위 <예 16>의 경우는 환적이 허용된 경우 수익자는 환적항과 환적한 선박명을 텔렉스나 팩스로 발행은행에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선적통지서를 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9. 승인증명서(Approval Certificate)

승인증명서는 수익자에게 물품의 견본이나 특정서류 등을 발행의뢰인(applicant)에게 발송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발행의뢰인이 승인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신용장의 요구서류에 포함되기도 한다.

<신용장 예 17>

46A Documents Required:

+ Approval Certificate issued and signed by applicant with company stamp that dye lot swatches were received and inside materials hangtag have not shown 'Made in Korea.'

위 <예 17>은 주로 섬유류 관련 신용장에 등장하는 문구로 발행의뢰인(applicant)이 염색 명세서를 받았고 물품 안쪽 태그에 'Made in Korea'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개설의뢰인이 서명하여 발행한 승인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통상 개설의뢰인이 승인을 하였다는 내용의 팩스나 이메일 등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Field 46A에 기재된 내용으로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10.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등 기타 증명서

신용장에서 물품의 품질과 관련된 서류로 분석증명서(Certificate of Analysis),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공장시험증명서(Factory Test Certificate), 품질증명서(Certificate of Quality) 등이 요구되고, 풀품검역과 관련한 서류로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물품

수량과 관련된 서류로 수량증명서(Quantity Certificate), 검수검량서(Tally Sheet) 및 기타 증명서들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 예 18>

46A Documents Required:
 + Inspection Certificate issued by SGS, CHINA at the port of loading confirming that the quantity and quality of goods is as per B/L and quality of goods is as per Standard ABC.
 + Singed copy of the Tally Sheet issued by SGS CHINA.

위 <예 18>은 중국에 소재한 검사기관인 SGS가 발행한 검사증명서와 검량서를 선적서류에 포함시키라는 것으로 역시 선적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상업송장이나 선화증권, 보험증권과 같이 대다수의 신용장이 제시하는 기본적인 서류들 외에 매우 다양한 증명서와 기타 서류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제품의 품질과 관련하여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e), 품질증명서(Quality Certificate), 공장시험증명서(Factory Test Certificate), 물품의 수량과 관련하여 수량증명서(Quantity Certificate), 검수검량서(Tally Sheet), 물품검역과 관련하여 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등 매우 다양한 서류들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실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서류기재내용의 차이가 심사단계에서 불일치(discrepancy) 판단의 근거가 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이와 같은 서류기재내용의 사소한 차이는 불일치의 근거가 되지 못하며, 위와 같은 사유로 불일치 판정을 받은 경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에서 제시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첨부된 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에서 요구한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ICC 은행위원회의 의견은 서류의 심사는 오로지 신용장과 UCP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ISBP가 서류불일치의 근거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하고 있다.³⁷⁾ 즉 ISBP는 UCP의 보충으로서 서류판단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하나, 서류불일치 판단의 근거는 UCP 규칙에 따라 행해야져 함을 말하고 있다. ISBP는 새로운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신용장 서류심사 실무관행을 성문화한 것으로 ICC 은행위

37)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 R704. "A refusal must be based upon a discrepancy under the terms of the credit and/or the UCP500, which may then be supported by the reference to a particular paragraph or paragraphs of the ISBP."

원회의 공식의견, DOCDEX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용장 거래에서는 각종 증명서를 비롯하여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서류조건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신용장 Field 46A의 요구서류에 명시된 서류 이외에도 Field 47A의 추가조건에도 각종 서류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실무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신용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만일 신용장이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제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신용장을 변경하여 신용장과 불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ISBP745는 UCP600의 서류심사기준에 대한 최신 버전으로 기존 ISBP681의 185개 항이 298개로 확대되었고, 화환신용장 거래에서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들 서류에 대한 명확한 심사기준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ISBP745는 기존 ISBP681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비유통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추가하고,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중량증명서(Weight Notes), 수익자증명서(Beneficiary's Certificate), 분석, 검사, 위생, 검역, 수량, 품질 등 기타 증명서(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Quality and Other Certificates) 등 실무현황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서류들에 대한 규정이 추가되어 신용장 거래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들 서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신용장의 서류제시기준과 불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줄어들고, 신용장의 지급거절 비중이 줄어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매우 다양하며, 비록 ISBP745가 ISBP681에서 규정한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전검사증명서, 분석증명서, 검사증명서 이외에 추가적인 서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이에 대한 판단근거를 제시하였으나, 여전히 신용장 거래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서류들에 대한 해석과 판단근거가 부족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ISBP745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함께, 특히 포장명세서, 중량증명서, 수익자증명서 등 ISBP745에서 새롭게 추가된 서류의 심사기준과 실무적 적용에 관한 시사점은 물론, ISBP745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신용장 조건에서 빈번하게 요구되는 각종 증명서와 통지서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신용장의 서류조건 일치에 대한 분석과 이에 따른 문제점도 함께 제시하고자 하였다.

비록 신용장의 불일치에 대한 판단이 UCP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ISBP는 UCP를 보완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ISBP가 신용장 거래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서류불일치를 해소하는 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실무업계에서는 신용장 조항에 나타난 다양한 선적서류들에 대한 지시사항과 UCP, ISBP 등의 규정을 숙지하고, UCP600과 ISBP745 등에서 제시되지 않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서류의 작성 시 이를 참조함으로써 신용장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불일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원진, "2007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반영된 업데이트 내용의 검토", 「한국무역상무학회지」,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년 5월, pp.97-121.
- 김동윤,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의 주요개정사항 분석과 시사점", 「통상정보연구」, 제15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9.27, pp. 177-197.
- 김영미, 「신용장거래에서 새로운 국제표준은행관행의 적용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8.
- 김재우, "ISBP 2007상의 복합운송서류 수리가능요건", 「관세학회지」, 제9권 제3호, 한국관세학회. 2008, pp. 269-289.
- 김종철, "화환신용장거래에서 물품명세의 일치성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0권 3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8. 8, pp. 239-261.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표준은행관행 ISBP 745 공식번역 및 실무가이드」, 대한상공회의소, 2013.
- 박성철, "ICC/ISBP의 실무적용상의 한계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5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03, pp. 227-243.
- 박세운, "ISBP745에서의 운송서류 개정 사항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5권 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2013, 6, 27, pp. 261-283.
- _____, "ISBP745에서의 일반원칙과 환어음 개정 사항 연구", 「무역연구」제9권 제3호, 한국무역연구원. 2013, pp. 131-150.
- _____, "ISBP745에서의 서류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원산지증명서, 수익자증명서, 검사증명서-",

- 「국제상학」 제29권 제1호, 한국국제상학회, 2014, pp. 27-44.
- 박세운, 한기문, "ISBP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4호, 한국관세학회, 2012. 11. pp. 247-287.
- 서정두, "ISBP(신용장 국제표준은행관습)의 주요내용과 적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20권(2003. 8), 한국무역상무학회. pp. 318-342.
- 이방식, 박석재, "신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제37권, 한국무역상무학회, 2008년, pp. 89-106.
- 전순환, "국제표준은행관행(ISBP)에 관한 연구-비운송서류를 중심으로-", 「창업정보학회지」, 제6권 제3호, 한국창업정보학회. 2003, pp. 319-344.
- 한재필, "신용장거래에서의 ISBP에 관한 연구", 「국제상학」, 제19권 제2호, 한국국제상학회, 2004. 6, pp. 133-160.
- ICC, ICC Banking Commission Opinions 2005-2008, New Opinions on UCP 600, UCP 500, ISBP, URC and URDG, 2009.
- _____,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45, 2003.
- _____,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681, 2007.
- _____,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ISBP), ICC Publication No. 745, 2013.
- Schmitthoff, 「The 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Trade」, Twelfth Edition, 2012.

ABSTRACT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ISBP745 and Practical Adaptation in the field

Jaewook Lim*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is a set of rules on the issuance and use of letters of credit. Historically, the commercial parties, particularly banks, have developed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handling letters of credit in international trade finance. This practice has been standardized by the 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publishing the UCP in 1933 and subsequently updating it throughout the years. The ICC has developed and moulded the UCP by regular revisions, the current version being the UCP600. This latest version, called the UCP600, formally commenced on 1 July 2007.

During the revision process, notice was taken of the considerable work that had been completed in creat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for the Examination of Docu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ISBP), ICC Publication 745. This publication has evolved into a necessary companion to the UCP for determining compliance of documents with the terms of letters of credit. It is the expectation of the Drafting Group and the Banking Commission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contained in the ISBP, including subsequent revisions thereof, will continue during the time UCP 600 is in force.

This paper focuses on documents including various certificates, Packing List, Weight List, Beneficiary's Certificate, Analysis, Inspection, Health, Phytosanitary, Quantity and Quality Certificates, Courier Receipts, Shipping Advice etc. and suggests some implications in the field.

Key Words : ISBP745, ISBP681, UCP600, ICC Banking Commission, Beneficiary's Certificate

* Assistant Professor,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